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시한 명시 등〉
■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05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특별감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시한 명시 등(안 제4조)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주철현의원 등 28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1.
3. 회부연월일 : 2024.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서 특정 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특검)’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과 ‘상설 특검법’으로 기능하는 현행법에 따른 임명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음.

현재 대부분의 특검은 개별 특검법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무력화되어 실효성이 없음.

반면에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즉시 발효되어 특검 임명절차가 개시되고, 법률안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음.

이에 따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안의 시행이 번번이 가로막히는 상황에서, 무력화된 입법권 회복과 신속한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특별검사 임명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일례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권한을 가진 국회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4명을 위촉하는데, 추천권한을 가진 교섭단체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고 특별검사 임명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함.

이에 과거 공수처장 임명과정에서의 절차적 지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소한 입법례를 참조하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시한을 명시하고, 추천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책임있는 입법권 행사를 보장하고 특별검사의 제도적 의의를 수호함과 동시에 사법정의의 중단없는 실현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

Ⅲ. 검토의견

1.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시한 명시 등(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국회는 제2조에 따른 수사의 결정이 된 이후 10일 이내----- -----구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4. ----- -----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국회-----
<신설>	가. 「국회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제1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신설>	나. 가목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신설>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현행	개정안
<u><신설></u> ⑤ ~ ⑧ (생략)	<u>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u> ⑥ <u>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같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u> 1. <u>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u> 2. <u>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u> ⑦ ~ ⑩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 개정안은 상설특검법에 규정된 특별검사 임명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특별검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10일 이내의 구성시한을 명시하고 (안 제4조제1항), 추천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안 제4조제6항 신설)하는 등의 내용임.
-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

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¹⁾

개정안은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추천주체를 기존의 ‘국회’에서 ‘제1교섭단체’ 및 ‘그 외의 교섭단체’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 절차가 적절히 진행되도록 함.

- 또한 개정안은 추천위원회의 구성시한을 명시하고, 교섭단체의 추천 기한과 아울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천에 갈음하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추천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이 국회의장 직권 위촉의 대상으로 규정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입법례²⁾가 존재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한다는 사실 외에 특별한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특별검사 제도의 성격 및 위원 위촉에의 적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³⁾

-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5.)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 12. 15.)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3)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위원은 아니나, 인사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을 추천하는 주체로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규정한 입법례는 아래와 같음.
- 「군사법원법」 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④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4. (생략)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6.~7. (생략)
- 「검찰청법」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4. (생략)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생략)
- 「검사징계법」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3. (생략)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생략)
- 「법원조직법」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③ (생략)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3. (생략)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생략)

문 의 처
02) 6788-5060